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3062호
- 다. 제출일자: 2025. 8. 11.
-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출자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노후 열수송관 교체 60억원(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99	59	200	140	240	60

나.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26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2026년 노후 열수송관 5.2km 정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사용 연수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60억원('26년)을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에 대한 서울시(이하 “시”) 출자는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59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출자 계획이 세 차례 변경되면서 출자금은 699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출자금은 2024년 140억원, 2025년 240억원, 2026년 60억원으로 조정되었음.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예정) 현황>

(단위: km, 억원)

구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진단구간		265	20	174	35	36	-
교체구간 (누계)	계획(최초, '22.)	49.6	2.6 (2.6)	13.2 (15.8)	9.6 (25.4)	11.0 (36.4)	13.2 (49.6)
	계획(변경, '23.)	41.6	3.4 (3.4)	9.1 (12.5)	8.0 (20.5)	9.4 (29.9)	11.7 (41.6)
	계획(변경, '25.)	26.7²⁾	3.4 (3.4)	3.0 (6.4)	6.0 (12.4)	9.1 (21.5)	5.2 (26.7)
	실적	13.5	3.4 (3.4)	3.0 (6.4)	6.0 (12.4)	1.1 (13.5)	-
출자금	계획(최초, '22.5.)	659	59	190	136	142	132
	계획(변경, '23.8.)	659	59	200	240	160	0
	계획(변경, '24.8.)	659	59	200	140	200	60
	계획(변경, '24.10.)	699	59	200	140	240³⁾	60
	교부	639	59	200	140	240	-
	집행액	456	59	109	224	64	-

※ 예산 금액, 공사 현장 여건, 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변경계획(公社 열수송기술부-724, '25.5.26.).
- 3)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출자 변경 동의: 200억원 → 240억원(20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214억원, 목동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26억원).

서울에너지공사는 시 출자금(699억) 범위 내에서 노후 열수송관 전체 물량 (41.6km)의 64%인 26.7km를 교체할 계획임('26년 5.2km 교체).

〈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추진(예정) 현황〉

구분	사업 대상					공사기간
	구간	관경(mm)	공사내용	배관길이(km)	소요예산(억원)	
동북권	중랑천(2·3공구)	700A	성능개선	3.70	42	'26.1.~12.
	당현천(중계지구)	750~450A		1.58	18	
	합계				5.28	60

※ 공사구간, 소요예산 등 사업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검토의견

-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계속사업(5개년)으로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⁴⁾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금번 출자 자체에 대한 이견 없으나,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 없이 열수송관 교체 길이와 금액만을 제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 동의안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기관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제출되어야 할 것임.

- 교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교체 대상 21.5km 중 13.5km에 대해서만 교체되는 등 일정이 지연(출자금 집행률 71.4%)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교체 물량을 41.6km⁶⁾에서 26.7km로 조정하고 잔여 구간인 14.9km는

4) 2022년~2023년 출자 동의안('22.5.), 2024년 출자 동의안('23.8.), 2025년 출자/변경 동의안('24.8.,10.)
5)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8. (생략)
6) 전체 열수송관 438.8km 가운데 20년 이상('04년 이전 매설) 경과 노후 구간은 265km이고 이 중 안전진단 "C등급" 받은 구간을 포함한 41.6km임.

공사 자체 예산으로 우선순위 선별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아직까지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보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일정 지연 및 계획 부재는 2024년 목동 공동구 인근 열 수송관 누수 사고로 인해 양천·구로구 5만 8천여 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중단⁷⁾된 사례에 미뤄 볼 때, 노후 열수송관 운영에 따른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C등급 이상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인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임.

7) 추석 앞두고...양천·구로구 5만 8682세대 온수·난방 공급 중단(중앙일보, '24.9.13.)